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3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7. 29(금) 14:00~15:48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제33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직접 회의에 참석해 주셨고요. 조용주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영상회의를 통해서 현재 참관 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보고와 관련하여 김윤희 정책혁신부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7인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위원 12인 중에서 대면 5인과 비대면 3인으로 총 8인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축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2021년 문체부 경영평가에서 2020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거의 유일해서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전 사무처의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전원 박수)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회의결과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제335차 전체회의에서는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36차 서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2개의 안건 역시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차(前次) 회의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회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 보고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 프로모션 운영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3건의 의결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66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 프로모션 운영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현재 부재인 관계로 공연예술부 정미연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연 공연예술부과장** : 안녕하십니까. 안건보고를 하게 된 정미연 과장입니다.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 프로모션 운영을 위한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경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창작산실 3개 사업의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에 4월에 의결·진행한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 결과 잔여 예산이 1억 2,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회의 내용이 잘 들리는지 회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인 점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회선을 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점검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안건을 보고해 주셨던 정미연 과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연 공연예술부 과장 : 예, 주요 진행 경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6월까지 창작산실 3개 사업의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 4월에 의결·진행된 올해의신작 지원심의결과 1억 2,150만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고요. 지난달 보고를 드린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심의 결과 318만 3,000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도 창작산실 잔여예산은 총 1억 2,468만 3,000원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여 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운영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을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대본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유통기회를 확장하여 우수 레퍼토리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고 사업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본공모 주관처 공모로 선정된 주관처 업체가 2022년도 선정작 21개 작품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일부 작품의 낭독공연을 개최하고 예술현장의 우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극 3건, 뮤지컬 3건 내외로 선정하여 1개 작품 당 연극은 700만 원, 뮤지컬은 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낭독공연 개최를 진행하게 될 주관처를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관처는 지원신청 자격에 최근 3년간 공연예술 분야의 축제형 행사 개최 및 자체적인 공연제작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5,000만 원 이상의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가 및 유통·제작사 등 네트워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박경주 위원님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인 조건을 “최근 5년간 1건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주관처 공모의 특성상 전체에 대한 심사를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정단체와의 원활한 커뮤니티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신청 자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주관처 지원신청 자격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오늘 의결이 되면 다음 주 중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고 9월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한 후 10월에서 12월까지 준비를 진행하고 내년 1월에 대학로 CJ 아지트 극장에서 대본 공모 유통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예술창작본부장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산실에서 1억 2,100만 원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실험활동에서 약 300만 원. 그래서 1억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부분을 불용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3쪽을 보시면 2022년도 대본 공모 선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건이 결정되어 지원을 받았습시다만, 이 부분을 공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13쪽을 보시면 2020년도에도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 21건에 대해서 리딩공연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은 6일 동안 연극 3편, 창작뮤지컬 3편 등 6편을 리딩공연으로 추진할 텐데요. 이 리딩공연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작품에 대해 리딩공연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것이 요지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전의견을 내신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박경주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고자의 보고는 있었습시다만, 직접 회의를 하면서 제의하실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취지는 기본적으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고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에 “최근 3년간”이라는 기준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코로나가 3년차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이라는 규정을 “최근 5년간”이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5년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나 제작의 숫자도 좀 완화를 해서 이후에는 제작 여건이 좋지 않았던 단체들이 원래 정상적인 사업으로 복원할 수 있는 문은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년 6개월 이상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에는 왕성한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고요. 그것은 당연하고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획사를 대신 선정하는 제도라서 실무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쪽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박경주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3년간 3건 이상으로 했더니 9개가 들어와서 1개 단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면 “5년간 1건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PT로 선정할 경우 행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5년간 3건 이상”이라고 조율하면 적정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수정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5년간 3건 정도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한을 완전히 풀면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제시하신 내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5년간 3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내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저도 송시경 본부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1건보다는 5년에 3건이 타당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동의안이 나왔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경주 위원** : 저도 송시경 본부장님이 주신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으로만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제시하신 박경주 위원님께서 개의안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성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원안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원안에서 “3년간”을 삭제하고 “공연예술 분야의 축제형 행사(다수의 공연을 일정기간 안에 무대화하여 모객하고 홍보하는 행사) 개최 및 자체적인 공연 제작 경력”이 부분을 “5년간 3건”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안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안건번호 제967호 2022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담당팀장이 휴가 중이므로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겠습니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안건번호 제967호 2022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참여자인 연수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으로서의 경력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과거 3년 이내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2022년도에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및 채용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단체에 국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해당 인력의 월 임금액의 50%를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 접수는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건수는 56건에 68명, 지원신청액은 약 4억 원 정도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장르별 심의위원 6인과 노무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심의 기준은 사전 행정검토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서 사무처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사항은 노무사가 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여부,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 근무조건의 적정성에 대해서 70%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운영현황에 대해서는 30%의 배점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심의한 결과로 심의기준 적용은 정규직 채용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준수 여부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력 54인에 대해서 전원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단체 중에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신청한 단체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전부 제외하고 나면 전환대상인 54인 전원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54명에 대해서 선발을 하게 되면 예산이 3억 1,09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상회를 합니다. 전체 54명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하려면 1,8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잔여예산이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그 잔여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발표는 8월 1일 월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단체와 심의총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 본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자료 14쪽부터 24쪽을 참조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자료 끝에 심의총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술인력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역량 대비 낮은 수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몇 가지 굵은 관점의 의미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굵은 의미의 사업효과나 사업의미 같은 것들이 수혜가 되어 문화예술 인력 분야라는 것과 예술단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기대한다는 사업의 의미가 적시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총평에서 잘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별도 의견 없으신가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거나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68호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68호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 경과를 지난 2022년 4월 29일 제33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흥태팀 위원께서 청년예술TF 소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요. 2022년 7월 14일 저희 7월 간담회에서 홍태림 위원께서 사무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149차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소위원회 운영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 오늘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존에 가능했던 부분이기에는 한데 명확하게 소위원회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 사항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에서 5년 이상 종사 기간을 삭제하는 부분. 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되 성별, 연령, 지역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특히 성별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희 근거법이나 국정 기조의 근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 준수 원칙을 삽입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구성원칙으로 소위원회 구성 참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원회 자격조건과 관련된 조항, 세 번째로는 소위원회 위촉 원칙에 대한 세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조의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1항은 소위원회의 근거가 되고 2항은 소위원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르별 소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 내용이 적시 되어 있고요. 제3항은 소위원회 구성의 방법, 인원,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4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문화예술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원칙을 천명하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당초 ‘인접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에는 한데요. ‘인접분야’라고 할 경우 제가 제6조에서 말씀드릴 제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충족을 위해서는 ‘인접’보다는 ‘관련분야’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기존 제1항에는 “소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본문을 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제안 열거로 제1호, 제2호, 제3호의 ‘5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완화해서 현재 개정안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해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구체적인 예시적 열거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을 모시도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는 기존에 ‘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률용어에 정비대상 용어로 ‘자’를 ‘사람’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각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에도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촉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6조 제2항을 보시면 “소위원회의 경험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하되, 남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몇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다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되, 성별, 연령,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균형 있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10분의 6 또는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소위원회의 특성이나 전문가 및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

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박경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박경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내용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했던 내용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3조 같은 경우 박경주 위원님께서는 구성원칙으로 동의를 하시면서 저희 본문에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해서 “다양한”이라는 용어를 앞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또는 인접분야의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과 문화예술 분야 또는 인접분야에 한정해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검토가 되면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6조 위원회 자격 부분에 대해서 박경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살리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예시적 열거로 단순히 “종사한 자.”는 적절하지 않고 ‘5년 이상’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의견이 타당하겠다. 너무 넓히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일정정도 자격을 주면서 종사기간을 넣는 것이 상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넣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너무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여지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공정성과 전문성을 본문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견으로는 실용성 측면에서 또는 조건 ‘5년’이라는 것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20~30대, 특히 20대의 참여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규정개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 자체가 사무처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서 일단 ‘5년’이 삭제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 2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박경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청년 같은 경우 제2항의 제2호가 되겠는데요.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도록 한다.”에 ‘포함’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6조 3항의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족을 하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의결안건이기 때문이에요. 단, 이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과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의 논의·의결 절차는 지난 6월에 흥태림 위원의 제안으로 6월 간담회 때 논

의하여 규정이 개정되는 것인데 그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의결하여 규정 개정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의견을 내 주신 박경주 위원의 사전의견 제출까지 포함하여 담당 부장이 보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좀 하자면 전조심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별 심의죠. 제3조, 제6조 등인데요. 특히 제6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항과 관련해서 박경주 위원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저희가 살펴봐야 할 지점도 있으니까 전조 심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하자면 박경주 위원의 사전의견도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큰 쟁점은 제6조의 '5년'을 넣을 것인가 빼 것인가와 관련해서만 논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자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된 부분은 빼거나 혹은 '포함'을 집어넣어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거나 또 자구의 순서를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원안도 좋고 수정안도 좋고요. 혹은 우리가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개의안을 낸다고 하면 개의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에 이른 정리가 조금 길기는 했습니다만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전조심으로 들어갈까요?

**박경주 위원 :** 지금 정창호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6조에서 세 번째에 기타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이 있었잖아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박경주 위원 :** 저는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제3항에서 '5년 이상'을 삭제하고 여기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20대가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제1항과 제2항은 '5년 이상'을 유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소위원회 성별 10분의 6과 39세 이하 10분의 2 이상 부분은 명확하게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사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서 왜 과반수가 아니라 10분의 6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에 청년이 배려되어 포함되었기 때문에 5:5가 아니라 10:6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미 청년을 배려해서 5:5가 아닌데 여기에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넣었을 경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2번에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제안했는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홍태림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정 제의와 관련해서는 부장님이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박경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원안의 경우 제6조 제1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가 각각 '5년 이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분야에 대해서 '5년 이상'이 들어간 부분인데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3호의 5년을 삭제하고 제1호와 제2호는 5년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제1호와

제2호는 5년으로 하고 제3호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유효하네요. 그러면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정정을 한다면 자구 수정만 남은 것 같아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사실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실에서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소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을 때 그 의견과 일치합니다. 제3호의 5년을 삭제하고 제1호, 제2호는 살리는 게 어떠냐? 그리고 만약 청년 부분에 장애 조항으로 작용한다면 제3호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취지상 제6조 제2항에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는 만 34세 이하로 되어 있지만 기타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와 기관 간 적용되는 청년 나이가 다른데요. 저희는 사업상 만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모두 충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제3조부터 문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는 차이인 것이네요. 그리고 “관련 분야 인사가 다양하게” 이 부분을 “인접분야의 다양한 인사가”라고 되어 있어서 자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략적인 규정심의위원회의 내용인데요. 제3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지금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제6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 분야를 넓게 정해서 적었기 때문에 ‘인접분야’가 아니라 ‘관련분야’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인접’과 ‘관련’은 용어상.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그래도 ‘관련’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6조 제3호에서 분야를 ‘기타 분야’라고 넓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분야’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앞의 부분의 ‘인접’과 ‘관련’은 용어 자체가 다른 용어네요. 그것은 ‘관련’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실무 쪽의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죠.

**장인주 위원** : 저는 ‘관련’에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접’과 ‘관련’의 문제가 있는데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도 있지만요. 그래서 의견을 더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 원안대로 가면 어떠한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정정숙 위원** : 그리고 ‘다양한 인사’라는 것 자체가 관련 분야라는 포괄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참여 자체에 방점을 찍는 부사로 쓰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가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박경주 위원** : 다름이 아니고요. ‘다양한 참여’와 ‘다양한 인사’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을 제안했던 홍태림 위원의 취지를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가 저는 조금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차이가 별로 없고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해 주신 홍태림 위원님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홍태림 위원** : 지금 원안이 박경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저도 보여서요. 그냥 원안대로 가도 박경주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신 부분은 잘 녹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만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제6조 소위원회 자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쟁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5년 이상 종사자에서 5년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6조에서는 보셔야 될 것이 5년을 삭제를 하는 경우의 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해당 소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살리고 제1호와 제2호의 5년을 살리되 3호의 5년을 없애면 기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까 보고 중에 감사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실장으로부터 직접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신 거죠?

**김기용 감사실장** : 규정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부패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이것

은 신규조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전문성 등과 관련된 자격조건 등 기존의 5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5년을 유지하고요. 대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풀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지위를 어느 정도..... 검증은 아니지만 약간의 제약조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장이 보고한 대로 박경주 위원님의 사전의견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홍태림 위원님께 제안자로서 의견을 들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원래는 6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까지 5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청년예술TF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다 빼는 게 원안이기는 했는데요. 관례적으로나 행정적으로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이 들어가는 게 있기도 하고 3조에서 기타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라는 부분에서 5년만 빼면 예전 소위원회 운영규정보다는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 2호까지 5년 이상은 다시 복구를 하고 3호에서는 5년 이상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6조 1항에서 공정성이나 전문성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이것은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저도 박경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십시오.

**장인주 위원 :**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저희가 5년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홍태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회의에서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에 있어서 5년 이상 활동을 한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것을 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홍태림 위원 :** 저희 청년예술TF에서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논의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5년 이상이라고 해서 자격기준을 제시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어차피 예외규정이 있는 사항이고 5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무의미하게 배제될 수 있는 경우의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전문성이나 예술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분이 활동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예술경력이 4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활동할 차원에서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4년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제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제의 가능성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홍태림 위원 : 법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요.

장인주 위원 : 위원회는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하죠?

홍태림 위원 : 기본법 상으로는 만 34세입니다.

장인주 위원 : 저는 홍태림 위원님께 39세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홍태림 위원 : 그것은 저희 기관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4세였다가 39세까지 늘렸어요. 저희 기관에 맞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청년기본법에 준하기 보다는 39세로 우리 기관 환경에 맞춰서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바꿨습니다.

장인주 위원 : 우리 기관에서는 39세까지인가요?

홍태림 위원 : 예.

장인주 위원 : 저는 청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굳이 5년이라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인해서 후에 논란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지금 39세까지라고 하면 최소 34세에 활동을 시작했으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데요. 왜 굳이 신체적인 나이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홍태림 위원 : 그래서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원래 5년 이상을 빼려고 했다가 제1호와 제2호는 5년 이상을 두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죠.

장인주 위원 : 제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도 최소 5년 이상은 활동을 해야지 소위원회 위원으로 모시죠. 전문가로 5년도 활동하지 않은 분을 모시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이 수치적인 거잖아요.

장인주 위원 : 저는 최소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홍태림 위원 : 그 수치가 과연 예술 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죠.

장인주 위원 : 저는 10년이라고 해도 이해가 갈 정도인데요. 5년은 최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5년의 항목이 최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굳이 삭제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박경주 위원 :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운영규정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은 청년

TF에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고요. 청년TF에 모였던 분들이 제시했던 내용이니깐요. 저는 앞부분보다 여기의 이슈는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10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고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요. 홍태립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성으로 위원회 소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을 작게라도 열어두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당연히 전문성은 기본으로 10년은 해야 하지만 기존에 최소 5년으로 되어 있던 조항이고요. 그러면 20대와 30대 초반 사람들이 당사자로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10년 기준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청년 당사자로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주 위원님께서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3호에서만 그것을 낮추자는 제안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제가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논의의 핵심은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거였고요. 청년을 포함해서 지역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표현이 제3조에서 제4항이 들어가고 제6조에서 제2항이 들어갈 때 구성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이고요. 아까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전문성 중심의 인사로 구성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소위원회를 봤을 때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전문성 외에 일반 국민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회인데 이때 제6조 제2항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고려하되” 이런 구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 방향 속에서 보면 지금 규정심의위원회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폭넓은 인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실질적이겠다고 생각해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14시 57분에 정유란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14시 57분 정유란 위원 온라인 참여)

**박종관 위원장** : 논의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핵심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격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5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냐? 혹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은 없느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견들이 서로 달리 회의에서 개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회의에서 논의하여 수정하면 되나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정 후 의결하면 된다면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조금 모아야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것은 5년 이상을 삽입하자, 삽입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 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28페이지에 있는 현행 제6조 제1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에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1호와 제2호에 5년 이상이 같이 연동되어 있고요. 사실 제3호는 기존의 조항에서 봐도 청년분들 특히 이런 부분에 5년 이상 해당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3호의 5년만 삭제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사무처의 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안건으로 올린 내용은 각 호의 5년을 제외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 제1호와 제2호의 5년은 살리고 제3호는 어차피 제2호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3호만 5년 이상 부분을 삭제하는 게 어떨지 말씀드리려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원안은 제1호, 제2호, 제3호에 있는 5년을 모두 삭제하는 안이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오늘 논의 중에 나온 것은 제1호, 제2호의 5년을 빼고 제3호에만 5년을 넣는 게 어떠한 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3개를 모두 살리는 안이 있나요?

**박경주 위원** : 지금 제1호와 제2호에는 5년을 넣고 제3호에서는 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1호와 제2호는 5년을 그냥 살리되 3호에서 5년을 빼자.

**장인주 위원** : 지금 말씀하신 1호, 2호의 5년 이상은 그냥 두는 것으로 홍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호의 5년 이상의 활동에서 5년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활동 증명을 어떻게 받을 건가요? 우리가 활동 증명을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활동 증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활동기간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래서 규정심의위원회에서도 5년이라고 설정한 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해서 빼도 상관없겠다고 한 것인데요.

**박종관 위원장** :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훌륭한 자를 위촉한다.”에서 5년을 그냥 남김으로 해서 생기는 오해나 손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요.

**장인주 위원** : 저희가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는 문항을 계속 봐 왔다는 말입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부

분이 제6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같은 경우 5년을 그대로 살리면 우리 예술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어도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기준을 이미 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6조 제1항의 제3호 같은 경우는 예외사항이라는 말이죠. 일반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특수한 이유로 모셔야 할 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행정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예술대학에서 활동한 기간을 예술경력으로 쳐주지는 않아요. 예술대학에서 나오고 나서 활동한 것을 보통 예술경력으로 인정해 주죠.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20대부터 30대 사이의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소위원회나 TF를 꾸려서 뭔가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20대로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25세부터 3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5년이라는 것 때문에 모실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3호에서는 5년을 빼는 게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저는 장인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만약 제1호와 제2호를 남겨놓으면 제3호도 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3안의 5년을 삭제하는 게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5년 정도의 활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어떤 공연단체의 컨설팅을 다녀봐도 5년 정도 활동했던..... 저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호와 2호는 물론이고 제3호도 남겨놔야 한다고 봅니다. 제3호를 없앤다는 건 오히려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유은선 위원님은 1안, 2안, 3안 모두 5년을 남기자는 안입니다.

**유은선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나온 논의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든 5년 이하의 예외규정을 갖추는 게 옳다고 규정을 개정한 것인데요. 개정하자는 것을 원안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의견을 물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제1호와 제2호의 5년을 남기고 제3호에서는 빼자. 그래서 예외 규정을 갖자는 정도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박경주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박경주 위원 :** 지금 개정의 목적이 청년층의 10분의 2 때문에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력부분에서 삭제를 요청했던 것은 청년 10분의 2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고필 위원 :** 논의 진행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위원회가 포용성이나 시대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봤을 때 기존의 방식보다 더 통로를 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의 제1항 제1호과 제2호의 5년이라는 것은 기왕에 저희가 준수해 왔던 것들이고 3항의 5년을 빼주면 포용성이나 이슈성이나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1호과 2호를 살리고 제3호의 5년 이상은 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유은선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합의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5년을 완전히 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 5년을 삽입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를 청년예술 분야 혹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텐데 규정 개정을 통해서 극복 하자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합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은선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제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었고요. 제2항으로 “소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위원의 경험과 학식 등” 이 부분은 원칙을 ‘준수한다.’와 ‘준수하여야 한다.’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조속히 논의를 종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포함되도록 한다.’ 역시 원래의 안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오늘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3호의 경우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중복함으로 해서 복잡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의견을 주시고 결정하시죠.

**정정숙 위원** : 어차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단’ 이 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인데요. 뺄므로 인해서 더 간결해진다면 빼도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체 전조 심의를 모두 마쳤는데 부족한 논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조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 제4항은 원안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제6조의 제1항 이하 호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5년을 넣고 제3호에서 5년을 뺄므로 해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2항의 경우에도 원안대로 가고 3항의 경우에는 “단, 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조항에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짓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을 중복하지 않는 것이 옳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으로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약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무처의 규정을 관장했던 규정심의위원장인 사무처장도 와 있고 감사실장도 있으니까 먼저 사무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이견 없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에 제1호와 제2호의 5년을 살리고 제3호의 5년을 삭제할 경우에는 당초 제6조 제1항의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있는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개정안을 불러주세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위원회 위원이 아닌 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1호는 5년은 살리고 제2호의 5년도 살리고 제3호의 5년 이상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성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에 3개의 의결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보고사항은 제45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제 29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5차, 제16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2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등 4개에 5건의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제45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정책혁신부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위원장의 보충 발언으로 이어가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45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6월 29일 개최가 되었구요. 이때 회의안건은 현장소통 정책제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모 대학교의 예술관련학과 교원 임용 불공정 사례와 해당 교원의 학생 대상 교수 불공정 행위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원회 백서 취합본을 공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당 대학교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교수 불공정 행위의 건인데요. 지금 현재 이 건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3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와 연계된 사항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하나는 2020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교수가 저희 심의위원 풀에 등록되어 있는 건입니다. 먼저 심의위원 풀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페이백과 관련된 것은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 본 내용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관련 단체의 대표에 대한 사후지원 중단이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계 내의 유사한, 특히 예술대학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나 대응체계 개선문제 그리고 예술계 자체의 자정 의지를 촉구하고 예비 예술인을 위한 권리교육보장기관으로서의 예술대학의 의무 강화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활동보고서에 대한 취합본 공유 및 검토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제안 안건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고 즉각적인 응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현장소통 소위원장님께서도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있는데 현장소통 소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면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발을 해야지 나중에 회수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들다면 관련된 내용을 감사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행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절차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9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29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2일 모임을 가졌고 최종적인 회의였습니다. 회의안건은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과 측면에서 보면 7기 위원회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했고 현장 참여와 공론장 운영을 활성화 했으며 특히 사회변동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과제를 공론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결과물에 기초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혁신 쪽의 연계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저희 예술위원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체부 예술지원 유관 기관과의 큰 차원에서의 정책협력 모임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4페이지 이하에서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주로 나왔던 내용으로 다음 위원회 숙제일 수 있겠는데요. 소위원회 부분에 대한 역할 설정문제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위원회와 사무처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계를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장과 협력적인 정책 개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술위원회가 건강하게 현장기반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이런 취지의 소위원회는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으로는 보고서 작성 중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계속 공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15차, 제16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15차, 제16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한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희 초안을 작성하고 성평등 소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작성안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이후 16차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초안에 대해서 세부 작성안 검토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평등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8월 2일에 최종적인 회의를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역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2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2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에 회의가 진행되었고 주요 회의안건은 블랙리스트TF 활동보고서에 대한 교정본 검토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같음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제2차 회의록과 관련해서 내부 당사자들께서 정정 요청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정 요청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3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해당사자의 보고 문건과 관련하여 수정 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여 수정된 거라면 그 이유를 달아 수정하고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여 4건이고 소위원회로는 5차의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으셨는데요. 총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받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개의 소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친 개최 결과보고를 모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접수 전에 담당부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죠. 오늘 회의 보고에서는 이 문건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한 대로 제45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29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5차, 제16차 성평등예술포럼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접수하고 제2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다음 위원회로 순연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모든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소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사무처가 매우 분주한 입장입니다.

다. 여름철이면서 혹서기인데 잠시도 쉴 새 없이 굉장히 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회의 일정을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차기 회의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혹시 기타 논의사항이나 보고사항 등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현재 비대면 회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확인 및 서명이 안 된 위원회 속기록이 몇 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확인과 서명을 위해 속기록을 예술가의 집에 보관해 놓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한 시간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경영공시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속기록의 경우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야 확정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 회의가 되면서 속기록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속기록을 속히 검토하고 서명해 주셔서 실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필 위원** : 저는 나주 본관에서 열람해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괜찮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속기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예.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혹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 때고, 특히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생기고 다시 팬데믹 현상을 겪는 형편에 있어서 예술계와 함께 우리 위원회 역시 긴장을 놓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공연단체 내에서 확진자가 생겨 공연이 취소되는 현상을 포함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예술계가 또 다시 어려워지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중요해지는 의미가 있는 하반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33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종료)

